

농기수리업·잡화소매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다.

수자원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된 농기구수리업 또는 잡화소매업 영업소의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에 해당한다. (대법원 2001.11.13. 선고 2000두1003 판결)